

건설소식

건설사 임금피크제 시행 '0'

제도 도입한 100인 이상 사업장 195곳 중 관련업종만 1곳 불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건설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이후 50대 이상의 고령층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도입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지원한 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06년 6억원에서 2008년 3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현재까지 37억원이 지급됐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은 기업과 지원인원도 2006년 84개 업체, 22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 현재 195개, 1,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 역시 2005년 2.3%에서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업체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95개 중 건설관련 업종은 중기제작업체 한 군데에 불과했다. 제조업이 75개, 농업임업이 31개 사업장에 달하는 것과 비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건설업종의 근로자 평균 연령이 다소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반면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 기술직의 경우는 나이를 먹어도 전직이 자유로워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일반 관리직은 수명이 짧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준다 해도 50대 이상 근로자의 연봉이 워낙 높아 기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하도급 상습 불공정업체 관리 대폭 강화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영조 주택 시정조치...연내 관련법 개정 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조주택 등 상습적인 하도급 불공정 업체에 대한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하도급법령을 고쳐 상습 위반업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 영조주택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작년 5월 공정위의 현장직권조사에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지연이자 미지급 등이 적발돼 올 2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성문건설 등 5개 업체에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2억1,6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배성물산 등 7개 업체에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4,833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공정위는 연내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적인 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습위반 건설업체는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8곳으로 늘었다”며 “이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업체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상습 위반업체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고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이며, 현장직권조사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범위반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여름철 건설현장 ‘감전사고 주의보’

작년 사망자 52명 중 7·8월에만 28명 숨져, 사망률 추락·끼임사고보다 최고 22배 높아

여름철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비중이 걸렸다.

매년 여름 감전돼 사망하는 근로자가 28명에 이르는 데다 부상자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년에 발행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52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54%(28명)는 7·8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수도 월평균 33명인 데 반해 7·8월에는 각각 62명, 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작업 내용별로는 전기공사(17명), 건축공사 등(11명), 이동기기작업(8명)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감전 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다른 재해보다 높다.

공단이 2008년 업무상 사망자 1,448명으로 재해 형태별로 사망률을 집계한 결과 감전 사망률은 11.6%로 추락(3.3%), 감김이나 끼임(0.68%), 넘어짐(0.53%)보다 4배에서 22배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전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00만명당 사망자 수를 뜻한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5.67명으로 미국(1.44명), 영국(0.68명), 일본(0.27명)에 비해 4배에서 21배 정도 높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공단은 여름철 산업현장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심사를 거쳐 누전 차단기 등 감전재해 예방기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감전예방 안전조치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은 △접지실시 △누전 차단기 설치 △전기작업시 전원 차단 이다.

감전재해 발생 시 호흡정지 1분 이내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하면 소생률이 95%까지 올라가며, 응급조치 시간이 늦어질수록 소생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구급차 도착 전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기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신축건물에 친환경 인증 의무화

서울시, 2030년까지...연면적 2,000㎡이상 건물 1만동 '그린빌딩'으로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면적 2,000㎡ 이상 건물 1만동을 그린빌딩화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207km 확충사업도 벌일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도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장기 녹색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 마스터플랜은 지난 2007년 4월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통해 발표한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로 장기화 했으며 △온실가스 감축(40%) △신재생에너지 보급(10% → 20%) △에너지사용량 감축(15% → 20%) 등 목표수준을 일부 높였다.

우선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민자 유치율 포함해 모두 44조원을 투입,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녹색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온실가스의 90% 이상이 건물과 교통 분야에서 집중 배출됨에 따라 서울

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감안한 '서울형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보급키로 했다.

특히 2030년까지 2000㎡ 이상 건물 1만동을 그린빌딩화하고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그린카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70% 확대와 자전거 전용도로 207km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녹색성장도시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해 서울형 10대 녹색 기술을 육성, 100만개의 녹색 일자리와 170조원 규모의 녹색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000억원씩 약 2조원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 녹색기술별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온상승률이 대한민국 평균의 2배, 지구평균의 3배에 이를 만큼 기후변화 대응 악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등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폭염과 황사 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의료보험장비도 개발키로 했다.

시는 마스터플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과 지방녹

색성장위원회 구성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과 관련, 올 하반기 중 시민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도시계획, 교통 및 일상생활에 이르는 도시 전방위적 그린 혁명을 실천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 경쟁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석면 1% 이상 있으면 반드시 전문업체 통해 제거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 건축물 철거·해체 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